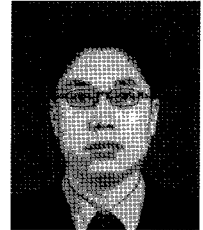


기술사 계속교육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강 영 주 편집위원회 위원
광림구조이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기술사 계속교육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Q&A

기술사 계속교육이란?

- 2007년 1월 26일 개정 공포(과학기술부 공고 제2007-48호)된 기술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기술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법제화, 국내기술사 자격의 국제통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우리회원들은 매 3년마다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技術士 (자격증 취득 1년 후부터)

우리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전문교육은 우리회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및 강습회를 통해 이수가능토록 협의 진행중

- 접수 및 교육관리 : 한국기술사회
- 교육진행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어떤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 필수 수강교육 (교육훈련 : 24학점)
 - 전문교육(필수 12학점) : 한국기술사회 상설교육원에서 이수가능
 - 기본교육(필수 12학점) : 한국기술사회 상설교육원에서 이수가능
- 자율학습활동 (교육훈련 : 66학점) : 직원교육, 강의, 우리회 회지 원고집필, 현장견학 등으로 이수가능

자율학습활동 외 학점인정은 없나요?

-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기술사 경력신고서(11호서식)작성 후 한국기술사회로 제출 시(등기료) 36학점 이수 인정

2007년 1월 26일 개정 공포(과학기술부 공고 제2007-48호)된 기술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기술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법제화, 국내기술사 자격의 국제통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우리회원들은 매 3년마다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회원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관리해야 할 기술사 계속교육(CPD)의 세부사항을 요약하면

- 2007.07.27 이전회원은 2007.07.27 이후 3년마다 매 90학점
- 필수 수강교육 (교육훈련 : 24학점 필수)
 - 기본교육(12학점) : 한국기술사회 상설교육원 이수 가능
 - 전문교육(12학점) : 한국기술사회 상설교육원 이수 가능
- 자율학습활동 (교육훈련 : 66학점)
 - 수습기술자(직원) 기술지도(36시간), 논문집필(60시간), 강의(60시간), 특허출원(60시간)등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하여 기술사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행하는 활동
-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기술사 경력신고서(11호서식) 작성 후 한국기술사회로 제출시(등기보) 36학점 이수
 - 학회, 세미나 참석 시 확인증 수령 (추후 학점 이수 인정)
 - 기술사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100만원부과 (기술사법 제22조)

1. 기술사 계속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1.1 필요성

국내외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술자의 능력과 자질향상, 즉 기술자의 전문적인 실무분야에 대한 지식, 일반적인 지식 및 기술적인 응용능력에 대해서 투명성, 국제적인 동등성, 적합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면서, 기술사의 전문성을 기술사계속교육(CDP)를 통해 높여가는데 필요성이 있다.

1.2 목적

- 1) 경쟁력 있는 기술사의 육성
- 2) 윤리관이 있는 기술사의 육성
- 3) 국제성이 있는 기술사의 육성
- 4) 기술사의 책무성 확보

2. 교육 대상 및 이수학점(인정기준)

2.1 교육훈련 대상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技術士 (자격증 취득 1년 후부터)

※ 교육면제 대상

- ① 기술사법 제3조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술사
- ②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교육 불가 사유를 소명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기술사

2.2 이수학점 (매 3년마다 90학점 이수)

3년 이상 기술사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술사가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미리 45학점 이수

2.3 교육훈련의 인정기준

90학점중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의 수강교육 각각 12학점 이상 필수

3. 교육훈련의 종류

3.1 수강교육

- 기본교육 : 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윤리, 환경, 안전, 기술·사회 및 경제의 동향, 사업관리, 국제규격·기준, 기술사 관련 국내외 제도, 국제계약, 외국어 등의 교육
- 전문교육 : 기술사 종목별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2 자율학습활동

- 논문집필, 강의, 특허출원 등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하여 기술사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행하는 활동

3.3 교육훈련의 종류·내용 및 인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

※ p.58 표참조

4. 기술사 교육훈련(CPD)관련 법령

4.1 기술사법 제5조의3 (기술사의 교육훈련)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가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향상시키고,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기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기술사가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경비 부담을 이유로 그 기술사에 대하여 불이익을

구분	교육훈련의 종류	인정사항	가중치	단위	인정최고학점	
수강 교육	(A01) 교육기관교육	(A0101) 「기술사법시 행령」 제14조 에 따른 교육 기관에서 실 시한 교육	국내외 최첨단 기술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	5~20	1건	90
			일반적인 기본교육, 전문교육	1	수강시간	
	(A02) 법정직무교육	(A021)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교육		1	수강시간	60
	(A03) 대학전공교육	(A301) 국내외 석사, 박사 학위 과정		10	취득학점	60
(A04) 그 밖의 수강교육	(A401) 국내외 단체나 업체에서 실시한 기술관련 교육		0.6	수강시간	18	
자율 학습 활동	(B01) 논문 등의 발표 및 저서 등의 집필	(B0101) 기술사회, 학회, 협회, 민간단체, 기업 등이 개최하는 기술논문 발표회, 연구회, 강연회, 심포지엄, 토론회 등에서의 발표		10~60	1편	60
		(B0201) 기술사회, 학회, 협회, 민간단체, 기업 등이 개최하는 기술 관련 학회지나 기술지 등에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10~50	1편	48
		(B103) 기술도서의 집필(번역서를 포함한다)		50	1편	60
	(B02) 연수 등의 강사	B(0201) 기술사회, 학회, 협회, 대학, 민간단체, 기업 등에서 개최하는 연수, 강연, 기술설명회 등의 강사 등(기술사 수강교육 강사로 서의 참가를 포함한다)		2	강의시간	60
	B(03) 기업(연구기관)내 연수 및 OJT(on the job training)	(B0301) 기업(연구기관)내 연수프로그램 및 OJT 참가		1	참석시간	12
	B(04) 기술지도	(B0401) 수습기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지도 활동		3	지도시간	36
	B(05) 산업현장에서의 업무경험	(B0501) 현장신기술, 신공법제안 보고서		10~30	1편	30
		(B050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회, 협회, 민간단체, 기업 등의 기술업 2무수행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업무		30	1회	30
		(B0503) 국내외 특허출원(발명 및 실용신안을 포함한다)한 업무		60	1건	60
	(B06) 자기주도 학습활동	(B0601) 통신교육(종료증서에 따른다)		1	수강시간	60
		(B0602) 자율학습(학습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	1건	12
		(B0603)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		0.6	참여시간	18
	(B07) 업무활동	(B0701) 기업(연구기관) 등에서의 해당 직무범위와 관련한 기술업무, 연구개발 등		2	참여기간 (1개월)	36
(B08) 그 밖의 자율학습 활동	(B0801) 기술관련 심의 및 심사활동		1	투여시간	30	
	(B080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이 인정하거나 승인한 공 적인 기술자격 취득		20	1회	24	
	(B080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이 심의회, 연구회 등의 위원, 학회 및 협회 등의 임원이나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		20	1회	24	
	(B0804) 그 밖의 분야에서 기술사의 계속교육(CPD)에 해당하는 것		0.6	1회	18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방법·기준·절차 및 교육기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사 계속교육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4.2 기술사법시행령 제12조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

- ①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자로서 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 이하 “기산일”이라 한다)부터 3년마다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기산일 이후 3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기술사는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미리 45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4.3 기술사법시행령 제13조 (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

- ① 기술사가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3년의 교육훈련 이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내용 및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③ 법 제5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교육훈련의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